

2022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개요

1. 세 입

-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210억 3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204억 2백만원 대비 3.1%(6억 3천만원)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0,402,003	20,402,003	21,028,584	626,581	626,581	3.1%	3.1%
세외수입	17,283,783	17,283,783	17,913,853	630,070	630,070	3.7%	3.7%
경상적	1,258,149	1,258,149	1,258,149	0	0	0.0%	0.0%
임시적	16,011,480	16,011,480	16,641,550	630,070	630,070	3.9%	3.9%
변상금	14,154	14,154	14,154	0	0	0.0%	0.0%
보조금	3,089,597	3,089,597	3,089,597	0	0	0.0%	0.0%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28,623	28,623	25,134	△3,489	△3,489	△12.2%	△12.2%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세목	구분	2022년도				비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0,402,003	20,402,003	21,028,584	626,581	626,581	-
자치단체간부담금		4,071,587	4,071,587	4,728,287	656,700	656,700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48,578	48,578	21,948	△26,630	△26,630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8,623	28,623	25,134	△3,489	△3,489	

2. 세 출

-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5조 3,862억 3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4조 2,416억 1천 5백만원 대비 27.0%(1조 1,446억원)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4,147,360,593	4,241,615,593	5,386,227,707	1,238,867,114	1,144,612,114	29.9%	27.0%	
행정 관 리	조정교부금	3,812,308,120	3,906,413,120	5,049,993,540	1,237,685,420	1,143,580,420	32.5%	29.3%
	행정운영경비	154,864,002	154,864,002	154,864,002	0	0	0.0%	0.0%
	재무활동	9,215,482	9,215,482	9,226,099	10,617	10,617	0.1%	0.1%
	사 업 비	170,972,989	171,122,989	172,144,066	1,171,077	1,021,077	0.7%	0.6%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2022년 예산		추경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4,147,360,593	4,241,615,593	5,386,227,707	1,238,867,114	1,144,612,114	29.9%	27.0%
행정장비구매	839,623	839,623	1,478,157	638,534	638,534	76.1%	76.1%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28,920,059	28,920,059	30,856,598	1,936,539	1,936,539	6.7%	6.7%
주요 시정행사 지원	297,641	297,641	501,641	204,000	204,000	68.5%	68.5%
조정교부금	3,812,308,120	3,906,413,120	5,049,993,540	1,237,685,420	1,143,580,420	32.5%	29.3%
지방선거 관리	43,952,740	43,952,740	40,628,044	△3,324,696	△3,324,696	△7.6%	△7.6%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877,279	877,279	1,787,279	910,000	910,000	103.7%	103.7%
국고보조금 반환	15,428	15,428	26,045	10,617	10,617	68.8%	68.8%
기록정보관리	2,662,984	2,662,984	3,319,684	656,700	656,700	24.7%	24.7%

II. 검토의견

1. 세입 예산 검토

-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자치구 차세대 업무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스토리지 증설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 6억 5천 7백만원(임시적 세외수입)을 증액 조정하고,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업무 이관에 따른 2천 7백만원 등 총 2건에 3천만원(임시적 세외수입,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가정	추경			
세입	총 계		20,402,003	21,028,584	626,581		
	세외수입	소 계	17,283,783	17,913,853	630,070		
		임시적		4,071,587	4,728,287	656,700	○ 자치구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스토리지 증설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 657백만원 ◦ 자치단체부담금(4,071백만원→4,728백만원)
				48,578	21,948	△26,630	○ 업무이관에 따른 감소정 △27백만원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48백만원→21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8,623	25,134	△3,489	○ 업무이관에 따른 감소정 △3백만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 등) ◦ 국고보조금사용잔액(28백만원→25백만원)

가. 업무이관에 따른 세입예산 감액 조정

- 행정국은 업무이관에 따른 세입예산을 감액조정하고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총 2건(3천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사업명 / 예산과목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세외 수입	임시적	48,578	21,948	△26,630	○ 업무이관에 따른 감조정 △27백만원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48백만원→21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8,623	25,134	△3,489	○ 업무이관에 따른 감조정 △3백만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 등)
					○ 국고보조금사용잔액(28백만원→25백만원)

- 지방재정법 제34조1)에서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에서는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중요한 정책 사업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 대하여 개별부서 추계 등을 취합하여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할 것을 권고하였음.

1)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행정국에서는 전년도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대상 금액을 2022년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자율방범연합회 지원(2,663만원)’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로, ‘북한이탈 주민정착지원사업 등(349만원)’은 남북협력추진단으로 2022년 1월 1일 업무 이관됨에 따라 동 예산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다만, 행정국은 업무 이관을 위한 과정에서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과 ‘국고 보조금사용잔액 등 세입 감조정’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와 긴밀한 논의를 했어야 하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업무이관받은 부서의 세입증액조정이 없는바 관련 실국의 세입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기록정보관리 관련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치단체부담금(6억 5천 7백만원)’은 “기록정보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자기록물 대량 이관 작업 중 저장공간 부족이 예상되어 스토리지를 증설하여 기록 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 업무의 시급성에 따라 증설을 신청한 1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미신청 13개 자치구는 2023년 스토리지 신규도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019,500	362,800	656,700
자산및물품취득비	1,019,500	362,800	656,700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산 및 물품취득비	○ 12개 자치구 대상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656,700,000원 = 656,700천원
	증감사유
	자치구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복제 스토리지 94TB 증설(자치구 수요조사결과 반영)을 위한 예산 증액 (656,700천원) - 종로, 광진,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 서초, 강남, 강동

〈 사업 개요 〉

□	<p>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
□	<p>추진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대량 이관 작업을 위한 여유자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의 업무관리시스템 변경으로 일시에 대량의 문서 이관 이슈 발생 - 검색 색인작업 등을 위해 저장공간 외 대용량 이관을 위한 작업공간 필요 ○ 자치구별 예산확보 가능한 시점에 따라 우선 증설하여 작업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지 용량 부족시 자료 이관 업무중단으로 업무 연속성 저해
□	<p>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2. 10월 ~ 12월 (3개월) ○ 총사업비 : 656,700천원 (부가세포함, 전액 자치구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자치구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복제 스토리지 증설(각 94TB) (※업무의 시급성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일부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자치구 : 종로, 광진,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 서초, 강남, 강동 *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한 자치구 일정에 따라 '22년 11월까지 자치단체부담금 납부 * '22년 스토리지 증설 미신청 13개 자치구는 '23년 스토리지 신규 도입으로 추진 <p>○ 자치구별 분담금액 산출(※추경가능 12개 자치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별 2025년까지 추가확보 필요량에 따른 분담금액 산출 (붙임3)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기준 필요량(A) = (자치구별 최근 4년 이관량 평균 × 향후 이관년도) + 작업공간 ※ 추가확보 필요량(C) = '25년 기준 필요량(A) - '22년 이관완료수 과부족량(B) ※ 분담금액(D) = 추가확보 필요량(C) × 1TB 당 도입단가(6,986천원) </div>

(단위 : GB, 천원)

자치구명	'25년 기준 필요량(A)	'22년 이관완료후 과부족량(B)	추가확보 필요량 (C=A-B)	분담금액(D)
종로구	8,490	2,130	6,360	43,389
광진구	5,155	△523	5,678	38,735
도봉구	7,908	△1,949	9,857	67,250
노원구	6,795	△1,789	8,584	58,564
은평구	8,073	1,780	6,293	42,931
서대문구	4,180	1,426	2,754	18,792
구로구	6,891	△3,333	10,224	69,753
금천구	14,073	7,974	6,099	41,613
영등포구	10,625	△3,412	14,037	95,765
서초구	10,579	1,874	8,704	59,386
강남구	6,308	△4,990	11,298	77,077
강동구	7,976	1,608	6,368	43,445
합 계			96,256	656,700

※ 과부족량(B) : '22년 이관완료시 (+)는 잔여량, (△)는 부족량임

□ 2022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319,684	
기록관운영 및 관리	2022.01~2022.12	43,895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기록물 운송비용
보안자료 파쇄	2022.01~2022.12	22,436	보안자료 파쇄 연평균 200톤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2022.01~2022.12	1,655,506	시, 25개 자치구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11개 자치구 전자기록물 이관)
중요기록물 정리사업	2022.04~2022.12	873,347	보존기간 30년 이상 종이기록물 15,000 정리 및 서울기록원 이관
서울기록문화관 및 옛시장실 운영	2022.04~2022.11	67,800	서울기록문화관 및 옛 시장실 운영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구매	2022.07~2022.12	656,700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구매 계획수립, 발주, 계약, 구매 및 설치

- 행정국은 동 사업에 필요한 6억 5천 7백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동시에 동 금액에 대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자치구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2022년 예산 편성시부터 시스템 도입 시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꼼꼼하게 살핀 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심도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 세출 예산 검토

-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행정장비구매” 사업에 6억 3천 9백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사업에 19억 3천 7백만원, “조정교부금” 1조 1,435억 8천만원 등 총 7건에 1조 1,479억 3천 7백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선거 관리”사업에 33억 2천 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가정	추경		
	총 계	4,241,615,593	5,386,227,707	1,144,612,114	
세출	행정장비구매	839,623	1,478,157	638,5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청사 및 조직개편 관련 사무실 소요집기 구매 618백만원 ○ 중대재해예방 관련 천장 조명 작업을 위한 고소작업용 리프트 구매 20백만원 ◦ 자산및물품취득비(840백만원→1,478백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28,920,059	30,856,598	1,936,5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청사 관련 임차료 및 관리비 670백만원 ◦ 사무관리비 (17,139백만원→17,809백만원) ○ 임차청사 제배치 비용(전기, 수도세 등) 148백만원 ◦ 공공운영비 (8,718백만원→8,866백만원) ○ 입주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1,068백만원 ○ 후생동 냉난방기 전기공사 50백만원 ◦ 시설비 (2,653백만원→3,771백만원)
	주요 시정행사 지원	297,641	501,641	20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사무식 및 신년인사회 등 204백만원 ◦ 사무관리비(172백만원→376백만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가정	추경		
	조정교부금	3,906,413,120	5,049,993,540	1,143,580,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조정교부금 예·결산차액 ◦ 자치구조정교부금 (3,906,413백만원→5,049,993백만원)
	지방선거 관리	43,952,740	40,628,044	△3,324,6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관위 납부 보전비용 확정에 따라 기타부담금 집행잔액 감소 △3,324백만원 ◦ 기타부담금(42,165백만원→38,841백만원)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877,279	1,787,279	9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비 부족분 반영 910백만원 ◦ 민간행사사업보조(578백만원→1,488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15,428	26,045	10,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11백만원 ◦ 국고보조금반환금(15백만원→26백만원)
	기록정보관리	2,662,984	3,319,684	656,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스토리지 증설 657백만원 ◦ 자산및물품취득비(363백만원→1,020백만원)

가. 행정장비구매

- 동 사업은 임차청사 및 조직개편 관련 소요 집기구입비(6억 2천만원)와 중대재해예방 관련 고소작업용 리프트 구매비(2천만원)등 총 2건에 대해 6억 3천 9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478,157	839,623	638,534
자산및물품취득비	1,478,157	839,623	638,534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사무실 재배치 소요집기 구매 = 618,534천원
	-신설 조직(임차청사 입주) 소요집기 구매 = 335,740천원
	▷ 개인집기(책상, 서랍 등) (950,000원*30명*17개부서)-206,150,000원(본예산) = 278,350천원
	▷ 공용집기(회의테이블, TV, 냉장고 등) (2,739,000원*17개부서)-19,173,000원(본예산) = 57,390천원 +공용공간 조성비용 30,000,000원
	-조직개편 재배치 소요집기 구매 = 282,794천원
	▷ 개인집기(책상, 서랍 등) (950,000원*680명)*0.4(재활용률 60%) = 258,400천원
	▷ 공용집기(회의테이블, TV, 냉장고 등) (2,904,000원*21개부서)*0.4(재활용률 60%) = 24,394천원

	○고소작업용 리프트 구매 20,000,000원*1대	=	20,000천원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맞춘 임차청사 확보 및 부서 재배치 등에 따른 신규 집기 구매 소요 반영 - 중대시민재해예방 관련 천장 조명 교체 등을 위한 고소작업용 리프트 구입 (2012년 신청사 입주시부터 사용하던 고소작업용 리프트 교체) 		

- 행정국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차청사에 입주하는 신설 조직 소요 집기 구매로 3억 3천 6백만원, 조직개편 재배치에 따른 소요 집기 구매로 2억 8천 3백만원 등 총 6억 1천 9백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나,
- 사무실 집기구매는 포괄예산으로 자의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내구연한 확인과 기능 이상 여부 등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자재창고 물품 등을 활용한 예산절감 노력을 수반하여 면밀한 예산편성이 필수적이나, 행정국은 꼼꼼한 수요조사 및 세부집행계획없이 일반적으로 해오던 재활용률 60%의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실 재배치 소요집기 구매	=	618,534천원
	-신설 조직(임차청사 입주) 소요집기 구매	=	335,740천원
	▷개인집기(책상, 서랍 등) (950,000원*30명*17개부서)-206,150,000원(본 예산)	=	278,350천원
	▷공용집기(회의테이블, TV, 냉장고 등) (2,739,000원*17개부서)-19,173,000원(본 예산)+공용공간 조성비용 30,000,000원	=	57,390천원

	-조직개편 재배치 소요집기 구매	=	282,794천원
	▷개인집기(책상, 서랍 등) (950,000원*680명)*0.4(재활용률 60%)	=	258,400천원
	▷공용집기(회의테이블, TV, 냉장고 등) (2,904,000원*21개부서)*0.4(재활용률 60%)	=	24,394천원

- 또한, 행정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시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시청사 안전관리 대상시설에 안전을 강화하고자, 천장 조명 교체 등을 위한 고소작업용 리프트 구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계획 〉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 시청사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및 조치
- 시설근무자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1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및 실시 등

시청사 중대시민재해 예방 강화

□ 시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청사 자체 안전점검 실시

- 일 시 : 2022. 1. 24. ~ 2. 4.(10일간)
- 점검대상 : 본관(도서관), 서소문 1, 2청사, 후생동, 직장어린이집
- 점검내용 : 시민 및 근무자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 시청사 자체 안전점검 결과

- 안전점검 결과 : 총 10건
- 안전조치 예정 : 7건 (완료 3건)

구 분	건축	전기	기계	녹지
10건	4건	3건	2건	1건

○ 분야별 자체 안전점검 내용(건축 : 3건)

분 야	건수	점 검 내 용
건 축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안전 난간 설치(3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소문 2동, 후생동(2개소) ▶ 본관 9층 점검통로 출입구 시건장치(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건장치로 안전사고 위험 방지 ▶ 서소문 1동 경계 울타리 파손 보수(3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타리 파손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 직장어린이집 담장 보수(3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균열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점검통로 출입구 개방

출입구 시건장치 설치 후

울타리 파손

- 전기분야 : 3건

분야	건수	점검내용
전기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작업용 장비 구매(8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안전을 위한 작업용 리프트 구입(높이 : 6.3m) ▶ 본관 지하 5층 정화조 통로 조도 개선(2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점검을 위한 조도 개선 ▶ 작업자용 미끄럼 매트 설치(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소문 1동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에 따른 시민 안전보호
		
고소작업용 장비 구입	정화조 통로 조도개선	미끄럼 매트 설치

- 기계분야 : 2건

분야	건수	점검내용
기계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관 정화조실 추락방지용 안전발판 및 난간 설치(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작업을 위한 안전발판 설치 ▶ 본관 옥상 냉각탑 사다리 추가설치(2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자 안전을 위한 사다리 추가 설치
		
안전난간 설치 전	안전난간 설치 후	냉각탑 작업용사다리 설치

- 녹지분야 : 1건

분 야	건수	점 검 내 용
녹 지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작업용 장비 구매(12월) - 본관 1층 수직정원 관리용 리프트 구매 - 구매계약 4월, 납품 12월 ※ 수입 제품으로 약 8개월 기간 소요

소요예산 및 향후일정

소요예산 : 약 366,000천원

○ 예산과목: 청사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시설비 / 공공운영비

분야별	건 명	소요비용
건 축	옥상 안전 난간 설치(3월 중)	55,000천원
	서소문 1동 경계 울타리 파손 보수(3월 중)	30,000천원
	직장어린이집 담장 보수(3월 중)	55,000천원
전 기	고소작업용 리프트 구매(8월 중)	20,000천원
	정화조 점검통로 등기구 교체(2월 중)	10,000천원
기 계	본관 옥상 냉각탑 사다리 추가설치(2월중)	1,000천원
녹 지	고소작업용 리프트 구매(12월 중)	195,000천원
계		366,000천원

- 고소작업용 장비는 예산확보 및 구매 기간 소요에 따른 하반기 구매 실시

향후계획

- 시설근로자 안전 교육 실시 : 매주 1회
 - 업무(근로) 일지에 교육 내용 첨부
- 시설물 자체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 실시 : 2월 ~ 3월
- 시청사 본관(도서관) 정밀안전진단 실시 : 4월~10월
- 분야별 법정 안전진단 실시 : 1월 ~ 12월

- 시청사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 조치를 위한 고소작업용 리프트 구매는 그 필요성이 예상된다고 할 것이나, 「중대재해처벌법(2021.1.26.제정)」 시행(2022.1.27.)에 따른 안전 조치 강화가 충분히 예상되었으므로, “행정장비구매” 예산(8억 4천만원)에 대한 본 예산 또는 제1회 추경시 사전에 계획 수립 및 편성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 예방은 서울시의 근원적인 책임이자, 한치의 양보도 허용해서는 안되는 최우선 가치로, 행정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공무원 및 종사자들이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 동 사업은 입차청사 확보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계획(2022.5.9.)에 맞춰 조직 개편 이전 재배치 필요 부서의 경우 기존 입차 예정 건물(더익스체인지서울)에 입주하고, 조직개편 연계 근무환경 개선에 따라 입차조건 및 입지 여건이 우수한 건물로 입차계획을 변경(당초 : 더익스체인지서울 → 변경 : 프레스센터 및 더익스체인지서울)하여 청사를 입차하고, 서소문청사 후생동 1층 연금매장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예정에 따라 전기공사 진행 등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19억 3천 7백만원(총3건)을 증액 조정 하려는 것임.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은 시청사 건축물 및 기계·전기·통신·소방·승강기 등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보수·정비와 고장 발생시 신속한 수리로 안정적인 청사기능을 유지하고, 청사입차, 공기질 개선, 녹지조성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0,856,598	28,920,059	1,936,539
사무관리비	17,809,729	17,139,154	670,575
공공운영비	8,866,575	8,718,575	148,000
국외업무여비	10,000	10,000	0
공무원 교육여비	6,680	6,68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00	72,000	0
특정업무경비	270,000	270,000	0
시설비	3,771,614	2,653,650	1,117,964
기타자본이전	50,000	50,000	0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 무 관 리 비	○청사 임차료, 관리비 등	= 899,575천원
	-청사 추가 임차비용	= 899,575천원
	▷ 더익스체인지서울 임차비용	= 91,680천원
	• 임차료 17,783,000원*3개월	= 53,349천원
	• 관리비 12,777,000원*3개월	= 38,331천원
	▷ 프레스센터 임차비용	= 807,895천원
	• 임차료 97,460,000원*4개월	= 389,840천원
	• 관리비 76,010,000원*5.5개월	= 418,055천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국비지원분 감액 △229,000,000원	= △229,000천원
	증감사유	
- 더익스체인지서울 추가 임차에 따른 임차료 및 관리비('22.10~12월, 3개월분)		
- 프레스센터 추가 임차에 따른 임차료 및 관리비('22.9~12월, 4개월분)		
※ 프레스센터 공사기간('22.7~8월) 관리비 45일분(1.5개월) 포함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임차비 국비지원에 따라 '22.7월~12월, 6개월분 임차비 감액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통지,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2208. 2022.6.22.)		
공 공 운 영 비	○임차청사 재배치 비용 등	= 148,000천원
	-재배치 비용 10,000,000원*14개 부서	= 140,000천원
	-추가관리비(전기, 수도세 등) 1,000,000원*8개월	= 8,000천원
	증감사유	
- 임차 청사 추가 확보에 따른 추가관리비(전기, 수도세 등) 및 재배치(이사) 비용		
시 설 비	○업무공간 확충 및 사무환경 개선	= 1,067,964천원
	-임차청사 입주사무실 리모델링 3,693㎡*289,186원	= 1,067,964천원
	○후생동 냉난방기 교체 전기공사	= 50,000천원
	-전력케이블 포설	= 20,000천원

	10,000,000원*2개소		
	-실내기 전원포설 10,000,000원*10개소	=	10,000천원
	-분전반 설치 7,000,000원*2개소	=	14,000천원
	-조명등 120,000원*50개소	=	6,000천원
	증감사유		
	- 임차청사 추가확보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임차 전용면적 3,693㎡) - 서소문청사 후생동 연금매장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 중 청사 임차 및 재배치를 통해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조직가편 연계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차료 및 관리비(3~5.5개월분), 재배치 비용, 리모델링 등 21억 1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보임.

※ ‘더익스체인지서울’ 임대료의 경우 2.5개월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3개월분에 대해 유상으로 임차하여 지상 12층 일부를 사용하고, ‘한국프레스센터’의 경우 입주지원금 총 2억 8천 1백만원을 지원받고 지상 4~6층 일부 및 전체를 사용하기로 함.

[임차청사 확보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변경 계획]

<input type="checkbox"/> 변경개요			
구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임차대상	더익스체인지서울	프레스센터	더익스체인지서울
임차면적	4,255㎡ (지상3~5층, 12층 일부)	4,607㎡ (지상4~5층, 6층 일부)	893㎡ (지상 12층 일부)
월 임차비용	34,544원/㎡ (렌트프리 2.5개월 적용)	34,232원/㎡	34,544원/㎡ (렌트프리 2.5개월 적용)
입주여건	시청사 100m, 지하철 150m 무교로 위치	시청사 50m, 지하철 50m 대로변(세종대로) 위치	시청사 100m, 지하철 150m 무교로 위치
대상부서	1인가구 특별대책 추진단, 코로나19 대응지원과,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1인가구 특별대책 추진단,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세부 추진계획

(1단계) 조기 이전 필요부서 입주 및 재배치

- 대상건물 : 더익스체인지서울(중구 무교로 21, 임대인 : (주)화산테크)
- 임차면적 : 연면적 893㎡ / 지상 12층 일부
- 임차기간 : '22. 8. 1 ~ '27. 7. 31.(5년) ※ 공사기간 : '22.5.21~7.31.
- 계약조건
 - 무보증금 및 렌트프리 2.5개월(총 12.5개월), 입주지원금 총 55백만원
 - 월 임차비용 40,161원/㎡(임대료 27,154원/㎡, 관리비 13,007원/㎡)
 - ※ 2.5개월 렌트프리 적용시 34,544원/㎡
 - ※ 구 찾아가는 동 추진지원단(3층 일부 345㎡) 기존대로 임차 연장 진행

(2단계) 조직개편 연계 근무환경 개선

- 대상건물 : 한국프레스센터(중구 세종대로 124, 임대인 : 서울신문)
- 임차면적 : 연면적 4,607㎡ / 지상 4~6층 일부 및 전체
 - 4층 전체(2,020㎡), 5층 전체(2,020㎡), 6층 일부(567㎡)
- 임차기간 : '22. 9. 1 ~ '27. 8. 31.(5년) ※ 공사기간 : '22.6.1~8.31.
- 계약조건
 - 무보증금 및 입주지원금 총 281백만원 지원
 - 월 임차비 34,232원/㎡(임대료 19,232원/㎡, 관리비 15,000원/㎡)

이전 재배치 대상 검토(안)

- (1단계)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및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이전 재배치

구분	현재 사무공간	실·본부·국	부서	재배치(안) (더익스체인지)	재배치 일시
1차	본관 6층	1인가구 특별 대책추진단	▶ 1인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장, 특별대책1반, 특별대책 2반	12층	'22.6.1.
		시민건강국		▶ 코로나19 대응지원과	

- (2단계) 임차청사 규모 및 직원현황 고려, 문화본부 및 관광체육국 이전 재배치

구분	현재 사무공간	실·본부·국	부서	재배치(안) (프레스센터)	재배치 일시
2차	서소문 1동 14층	관광체육국	▶ 체육진흥과	4층	'22.8.1.
	서소문 1동 5층	관광체육국	▶ 관광체육국장,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체육정책과	4층	

	문화본부	▶ 디자인 정책과	5층	
서소문 1동 4층	문화본부	▶ 문화본부장,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	5층	
서소문 1동 2층	문화본부	▶ 문화시설추진단장, 박물관과, 문화시설과	6층	

⇒ 해당 실·본부·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간 구성 및 부서별 배치(안) 결정 ※ 조직개편에 맞춰 이전 대상 실·본부·국 변경 가능

○ 행정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5조²⁾에서 청사 등의 설계에 있어 직무 관련 1명당 면적기준을 7㎡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 청사별 1인 근무면적은 평균 6.3㎡로, 부족한 청사 공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시청사 1인당 사무면적 현황]

- 5급 이하 1인당 사용면적(6.3㎡) → 법정면적(7㎡) 미달 (’22. 5월 기준)

구 분	연면적	사무면적	부서수	근무인원수	1인당 평균 사무면적(㎡)
계	166,471㎡	32,504㎡	163개	5,126명	6.3㎡
본 관	90,743㎡	13,200㎡	60개	2,032명	6.5㎡
별 관	45,325㎡	10,344㎡	52개	1,789명	5.8㎡
서소문2청사	30,403㎡	8,960㎡	51개	1,305명	6.9㎡

※ 출처: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제311회 임시회)

-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의 본청

가.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단위 : m²)

구 분	시장실	부시장실	1급	2~3급	과장	5급 이하
기관별						
시본청	165.3	99	50	33	17	7

※ 시장실, 부시장실은 비서실 면적 포함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이하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명	200명 이상인 경우 면적 =0.8m ² ×사용인원	
	4~2.4m ² /명	2.6~1.5m ² /명	2~1.2m ² /명	1.6~1m ² /명	1.2~0.9m ² /명		
상 황 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구청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초과			
		0.43m ² / 명	0.40m ² / 명	0.33m ² / 명			
	엘리베이터	(12.87~19.6m ²) × 대수					
식 당		1.63m ²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m ²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m ² ×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m ² ~0.2m ² ×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명	2~3명	4명 이상				
	15.12m ² / 명	11.52m ² / 명	8.64m ² / 명				
자 료 실		(0.3~0.4m ²) × 공무원 수					
창 고		0.72m ² /명 ~ 0.85m ² /명					
전 산 실		9.79m ²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m ² 이상					평시 총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 실	연 면 적	3,000미만	3,000이상 7,500미만	7,500이상 13,000미만	13,000이상 18,000미만	18,000이상 23,000미만	23,000이상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총장비실	사무공간	500m ²		800m ²		1,000m ²	
	총장비실	6.6m ²		8.4m ²		10.2m ²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미만	1,000이상 4,000미만	4,000이상 8,000미만	8,000이상 12,000미만	12,000이상16,000 0미만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이상 20,000미만	20,000이상 24,000미만	24,000이상 28,000미만	28,000이상 32,000미만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 다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5조에서는 청사 등의 설계에 있어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과 부속공간 면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행정국은 청사별, 직급별(직무) 1인당 면적기준에 적합하게 배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 조차 없이 청사의 사무공간을 운영중에 있는 바, 청사 임차에 앞서 청사별, 직급별 효율적 배치 여부에 대한 현황 및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행정국은 임차청사별 부속공간 운영 면적과 실태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 제출과 함께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임차청사 층별 실국, 면적, 인원 현황)

○ 서소문 2청사 : (5~20층) 각 1,799㎡, (4층) 1,613㎡

구분	실·국 명칭	부서현황	
20층	스카이라운지	카페(마루), 대회의실, 스마트회의실, 세미나실, 소회의실1~3	
19층	경제정책실 (1실장, 27기획관, 9개부서, 235명)	경제정책실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18층		창업정책과, 캠퍼스타운활성화과, 도시농업과, 제조산업혁신과	
17층		신성장산업기획관, 전략산업기반과, 바이오신산업과, 금융투자과,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16층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정책관, 5개부서, 149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지역건축안전센터, 재정비축진사업과	
14층	주택정책실 (1실장, 8개부서, 211명)	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지원센터, 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	
13층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 공동주택지원과, 주거정비과	
12층	도시계획국 (1국장, 7개부서, 174명)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도시관리과	
11층		전략계획과, 시설계획과, 토지관리과, 도시빛정책과	
10층	시민협력국 (1국장, 5개부서, 108명)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사회협력과, 갈등관리협치과	
9층		시민숙의예산과, 지역공동체과 남북협력추진단장, 남북협력담당관, 개발협력담당관,	
8층	푸른도시국 (1국장, 5개부서, 123명)	푸른도시국장,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자연생태과	
7층	기술심사담당관 (1개부서, 35명)	조경과, 산지방재과, 기술심사담당관	
6층	주택정책실 (3개부서, 68명)	경제정책실 (1개부서 17명)	총괄 건축가
5층	평생교육국 (1국장, 4개부서, 95명)		평생교육국장, 교육정책과, 평생교육과, 청소년정책과, 친환경급식과
4층	시민 감사옴부즈만 (1개부서, 32명)	공정거래 종합 상담센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교육협력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교육플랫폼추진반,

○ 무교청사 : 3층 690 m^2 , 4층 726 m^2 , 12층 893 m^2

구분	실국명칭		부서현황
12층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1단장, 2개반, 33명)	시민건강국 (1개부서, 16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1반, 특별대책2반, 코로나19대응지원과
4층	자치경찰위원회 (1위원장, 3개부서, 40명) ※ 경찰관 22명 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협력과
3층			자치경찰지원과

○ 청계청사 : 3,8~15층 각 1,038 m^2

구분	실국명칭	부서현황
15층	도시기반 시설본부 (1본부장, 2국장, 12개부서, 341명)	설비부
14층		방재시설부
13층		건축부
12층		토목부
11층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국장, 총무부
10층		도시철도국장, 도시철도계획부, 안전관리과
9층		도시철도사업부, 도시철도토목부
8층		도시철도건축부, 도시철도설비부
3층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 또한, 행정국 업무보고 자료(17쪽)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청사 기준면적을 충족(전체 연면적 166,912 m^2 중 118,983 m^2 을 사용하고 있어 기준면적 127,402 m^2 로 기준면적 93.4%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청사 면적현황을 살펴보면, 본관의 경우 연면적 90,743 m^2 중 13,200 m^2 를, 서소문1청사의 경우 연면적 45,325 m^2 중 10,344 m^2 를, 서소문2청사의 경우 연면적 30,403 m^2 중 8,960 m^2 만을 사무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땀질식 임차 청사 운영보다는 자체 청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국 업무보고 자료(17쪽) 〉

청사별 현황

○ 총 8개 청사, 181개 부서 입주, 약 5,559명 근무

(’22. 5월 기준)

구분	청사명	규모 (연면적)	준공 연도	입주부서 현황	비 고
본관	본관 청사	지하5층/지상13층 (90,743㎡)	2012년	60개부서, 2,032명 입주	
별관	서소문1동	지하2층/지상15층 (28,039㎡)	1975년	45개부서, 1,578명 입주	
	서소문2동	지하1층/지상10층 (13,661㎡)	1975년	1층 부속의원 및 신한은행 등 입주	2·3층 재산관리관 변경 총무과 → 의회사무처
	서소문3동	지하1층/지상4층 (1,218㎡)	1975년	2개부서, 78명 입주	
	서소문5동	지하1층/지상7층 (2,407㎡)	1975년	5개부서, 133명 입주	
임차	서소문 2청사 (시티스퀘어 빌딩)	지상4~20층 (30,403㎡)	2019년	51개부서, 1,305명 입주	
	무교 청사 (더익스체인지 빌딩)	지상3~4층, 12층 (2,309㎡)	1980년	6개부서, 92명 입주	
	도시기반시설본부 (프리미어플레이스)	지상3·8~15층 (9,342㎡)	1992년	12개부서, 341명 입주	

운영실태

○ 청사 기준면적 127,402㎡ 중 118,983㎡ 사용(공유재산법 시행령)

- 기준면적 충족(93.4%), △8,419㎡ 사용 가능

○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속적 조직확대로 사무공간 부족 심화

- 5급 이하 1인당 사용면적(6.3㎡) → 법정면적(7㎡) 미달

(’22. 5월 기준)

구 분	연면적	사무면적	부서수	근무인원수	1인당 평균 사무면적(㎡)
계	166,471㎡	32,504㎡	163개	5,126명	6.3㎡
본 관	90,743㎡	13,200㎡	60개	2,032명	6.5㎡
별 관	45,325㎡	10,344㎡	52개	1,789명	5.8㎡
서소문2청사	30,403㎡	8,960㎡	51개	1,305명	6.9㎡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 (제95조제2항제1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본청 청사

구 분		기 준 면 적
특별시		127,402㎡
광역시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68,333㎡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52,784㎡
	인구 200만명 미만	37,563㎡
특별자치시		35,383㎡
도	경기도	77,633㎡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	44,974㎡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43,376㎡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39,089㎡
특별자치도		32,223㎡

○ 한편,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 증가(2명)와 위원회 신설(주택균형발전위원회 신설) 등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청사 면적 초과를 우려하여 추가적인 업무공간 확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기관별 형평성을 감안한 청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의회 청사 면적 현황]

법규상 청사 기준면적 : 24,93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실제 사용면적 : 24,722㎡ (법규상 면적의 약 99.1%)

청사별 면적현황

(‘21.1.12. 기준)

계	의회본관	의원회관	서소문2동 (2~8층)
24,722㎡	7,109㎡	7,146㎡	10,467㎡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 (제95조제2항제3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의회 청사

구 분		기 준 면 적
특별시		24,930㎡
광역시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11,054㎡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7,291㎡
	인구 200만명 미만	5,174㎡
특별자치시		4,889㎡
도	경기도	29,164㎡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	12,700㎡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11,524㎡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9,878㎡
특별자치도		8,467㎡

○ 둘째, 본청과 3개 청사(1,2,5동) 이외에 임차청사 전체 예산은 207억 1천 9백만원이며, 추가로 21억 5천 6백만원을 증액 확대하려는 것인 바, 소모성 비용인 임대료 지급으로 세금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여부와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비용 축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차청사별 임대료, 관리비 현황〉

('22.7월 기준, 부가세 포함)

구분	임차면적	계약기간	금 액
시티스퀘어 (서소문2청사)	전체면적 : 30,403㎡ 전용면적 : 16,136㎡ (지상 4~20층)	13~20층: '20.1.1~'24.12.31. 4~12층: '20.3.1~'24.12.31.	보증금 : 1,600백만원 임대료 : 월 1,176백만원 관리비 : 월 461백만원
더익스체인지서울 (무교별관)	전체면적 : 1,416㎡ 전용면적 : 955㎡ (지상 3~4층)	'22.7.1.~'24.6.30. ※ 3층: 舊 찾동(345㎡) 3~4층: 자치경찰위원회(1,071㎡)	보증금 : - 임대료 : 월 44백만원 관리비 : 월 21백만원
프리미어 플레이스 (청계별관) ※도시기반 시설본부	전체면적 : 9,342㎡ 전용면적 : 0㎡ (지상 3,8~15층)	'22.3.11.~'23.3.10.	보증금 : 1,068백만원 임대료 : 월 255백만원 관리비 : 월 109백만원
더익스체인지서울 (추가 임차 청사)	전체면적 : 893㎡ 전용면적 : 602㎡ (지상 12층)	'22.8.1.~'27.7.31. ※ 공사기간 : '22.5.21.~'22.7.31.	보증금 : - 임대료 : 월 27백만원 관리비 : 월 13백만원
한국프레스센터 (추가 임차 청사)	전체면적 : 4,607㎡ 전용면적 : 3,091㎡ (지상 4~6층)	'22.9.1.~'27.8.31. ※ 공사기간 : '22.6.1.~'22.8.31.	보증금 : - 임대료 : 월 97백만원 관리비 : 월 76백만원

- 셋째, 행정국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 사업 관련 청사 임차계약을 완료(더익스 체인지 서울 2022.5.20. 계약완료, 한국프레스센터 2022.6.1. 계약완료)하였을 뿐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도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행정국의 책임있는 해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1인 가구 추진단 및 코로나19 대응과는 예산과 포괄예산 활용 우선 임차

[임차청사 확보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변경 계획]

'22년 소요예산 : 1,010백만원(임차료 497, 관리비 513)

- 예산 확보방안 : '22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반영

추진일정

- 임차 협의 및 임대차 계약서 검토 : '22.5월 초
- 사무실 임차계약 : '22.5월 중
- 1차 재배치 리모델링 및 입주 : ~ '22.6.1.
- 임차비용 등 추가경정예산 반영 : '22.8월
- 2차 재배치 리모델링 및 입주 : ~ '22.8.1.(예정)
- 연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1,010	2,504	2,594	2,686	2,766	1,816
프레스 센터	소계	809	2,106	2,169	2,234	2,301	1,565
	임차료	390	1,183	1,219	1,255	1,293	879
	관리비	419	923	950	979	1,008	686
더익스 체인지 서울	소계	201	398	425	452	465	251
	임차료	107	243	265	287	296	150
	관리비	94	155	160	165	169	101

※ 부가세 포함, 연 임차비용 상승률 3%, 입주비용은 입주지원금(백만원) 차감

※ 프레스센터 입주비용 1,194백만원, 더익스체인지서울 입주비용 232백만원 별도

- 한편, 동 추경예산안 ‘사무관리비’예산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국비지원분 감액’으로 2억 2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는바,
 - 이는 기존 자치경찰위원회 임차비용을 행정국 총무과에서 편성하였으나, 자치경찰위원회 국가보조금 교부 통보(2022.6.22.)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임차비용을 납부하게 되어 해당 비용을 감액한 것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임차 및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 추진경위
 - '21.7.23 : 자치분권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재정지원방안 의결
 - '21.12.2. : 국회 예결위에서 자치경찰위 사무기구 지원비 130억 증액(2년 한시)
 - '22.6.22. : '22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1차) 교부 통보(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2208, '22.6.22.)

○ 보조금 지원액 : 총 892,963천원

- '22.6월 국고보조금 1차 교부(625,074천원) 및 2차교부 '22년 하반기 예정

시·도	교부결정액	교부액(1차)	교부잔액	비고
서울특별시	892,963천원	625,074천원	267,889천원	자치경찰위원회 교부

○ 감액사유

- 기존, 자치경찰위원회 임차비용은 총무과에서 납부하였으나, 자치경찰위원회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임차비용 납부토록 협의('22.6월)
-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임차비용으로 편성한 '22년 예산중, '22.7~12월(6개월분) 자치경찰위원회 임차비용 229백만원감액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임차 현황

- 임차면적 : 더익스체인지서울 3,4층 일부 1,071㎡(전용 722㎡)
- 입주부서 : 자치경찰위원회(1위원장, 3개 부서, 40명) ※ 경찰 22명 별도
- 월 임차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총 계	소계(1~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88,678	48,113	48,113	48,113	48,113	48,113	48,113
517,690	소계(7~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9,000	49,154	49,154	49,154	49,154	16,193	16,193

※ '22.11월~12월은 임차비용 면제, 관리비만 부과

※ '22.7월, 임대차계약 제7조에 따른 월 임차료, 관리비 조정(임차료 3%, 관리비 0.5% 인상)

다. 주요 시정행사 지원

- 동 사업은 신년인사회, 시무식 등 시정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국경일 등 국가주요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국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023년 신년인사회 대관료 및 운영비, 2023년 시무식 대관료, 2022년 3,4분기 직원조례 대관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총 2억 4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501,641	297,641	204,000
사무관리비	376,041	172,041	204,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5,600	125,600	0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 무 관 리 비	○2023년 시무식 및 신년인사회 등 = 204,000천원
	-2022년 3,4분기 직원조례 대관료 22,500,000원*2일*2회 = 90,000천원
	-2023년 시무식 대관료 22,500,000원*2일 = 45,000천원
	-2023년 신년 인사회 = 69,000천원
	▷ 대관료 17,000,000원*2일 = 34,000천원

	▷ 운영비 35,000,000원*1회	=	35,000천원
	증감사유		
	○ 코로나19로 장기 미개최된 전직원 정례조례 개최에 따른 대관료 편성(3,4분기) ○ 2023년 시무식 관련 대관료 편성 ○ 2023년 신년 인사회 관련 대관료 및 무대설치비용 등 소요 ※ 장소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혹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예정		

- 행정국은 2023년 시정행사를 2022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하는 사유로,
 - 기존 시무식 개최 후 행사장(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대관료를 후납해왔으나, 세종문화회관 대관 규정상 대관료는 행사 이전에 완납하는 것이 원칙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2023년 대관료 선납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위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음.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대관내규 >

제11조(사용료)

- ② 정기대관자는 대관승인 통보 후 9일(장기는 15일) 이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90일전까지, 체임버홀 6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기간 3주 이상의 장기공연의 경우 대극장은 180일전까지, M씨어터 및 S씨어터는 120일전까지 잔금의 50%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9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조기매표를 위한 입장권 검인을 필요로 할 시에는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전액을 납부한 후 검인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대관내규’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새로 개정된 바 없이, 기존부터 선납으로 규정되어 왔으므로 행정국은 이를 충분히 예상하고 2022년 예산 편성 당시 이를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세부집행계획 및 세밀한 예산 검토 없이 이를 누락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행정국의 책임있는 해명과 함께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2년 기존 예산으로 ‘시무식 및 간부 새해인사회 행사장 임차료(4천 5백만원)’, ‘신년인사회, 시무식 준비 등(2천 2백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음.

〈 2022년 예산편성한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시무식 및 간부 새해인사회 행사장 임차료 45,441,000원 = 45,441천원	○ <u>시무식 및 간부 새해인사회 행사장 임차료</u> <u>45,441,000원</u> = 45,441천원
	○ 음향·영상장비 임차 등 15,000,000원 = 15,000천원	○ 음향·영상장비 임차 등 15,000,000원*1회 = 15,000천원
	○ 행사소모품 등 구매 30,000,000원 = 30,000천원	○ 행사소모품 등 구매 30,000,000원 = 30,000천원
	○ 직원업무용수첩 및 전화수첩 81,600,000원 = 81,600천원	○ 직원업무용수첩(일반 및 포켓용) = 81,600천원 - 3,000원*25,00부 = 75,000천원 - 2,200원*3,000부 = 6,600천원
증감사유		
올해 수준 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신년인사회, 시무식 준비 등 22,000,000 = 22,000천원	○ <u>신년인사회, 시무식 준비 등</u> <u>22,000,000원</u> = 22,000천원
	○ 시정행사 추진 간담회 및 유관기관 협력 등 101,000,000 = 101,000천원	○ 시정행사 추진 간담회 및 유관기관 협력 등 100,000,000원 = 100,000천원
	○ 주요귀빈 및 외교사절 방문지원 12,000,000 = 12,000천원	○ 주요귀빈 및 외교사절 방문지원 13,000,000원 = 13,000천원
		○ 대국회·대의회 협조 및 정당 관련 업무 등 22,000,000원 = 22,000천원
증감사유		
업무추진비 실국한도액 및 업무추진비 증액		

-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발생이 올해 가을 이후로 예상되고 있고,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2022년 3,4분기 직원조례 대관료 (9천만원)’편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제39대 서울특별시장 오프라인 취임식’이 행사 전날 취소된 바, 재난 등 여러 요인으로 행사가 취소될 수는 있다고 하겠으나, 사전에 의회에 보고 및 예산 편성 없이 사전에 업체와 계약한 후 정례조례 등과 함께 포괄 예산으로 행사 취소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고 부족한 금액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아울러, 행정국은 동 추경예산을 포괄예산으로 하여 자의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제39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식 관련 개요 >

○ 제39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식 개요

- 일 시 : 2022. 7. 1.(금) 10:00 ~ 10:16
- 장 소 : 본청 3층 SCN(서울시청방송)실
- 진행방법 : 온라인 생중계(TBS, 유튜브 등)
- 주요내용 : 개식영상 상영, 취임선서, 취임사
- 소요예산 : 없음(자체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을 활용)

○ 제39대 서울특별시장 오프라인 취임식 취소 현황

- 취임식 전일(6.30일) 무대 등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상황에서 온라인취임식으로 변경되어 취임식 준비 업체에 물품 제작 및 과업 수행 비용 정산 지급 예정
- **취임식 준비 업체 지급 비용 : 금96,470천원**

※ 세부내역 : 시설물 설치 62,700천원, 인건비 5,940천원(1일치), 물품 제작 등 27,830천원

〈 제39대 서울특별시시장 오프라인 취임식 개요 〉

- ▶ 일시 및 장소 : 2022. 7. 1.(금) 10:00 ~ 10:45 (45') / DDP 알림1관
- ▶ 참석 인원 : 1,500명
- ▶ 주요 내용 : 취임선서, 취임사, '약자와의 동행 서울' 주제 이벤트
- ▶ 방송 : 라이브서울, 사내방송, TBS 등으로 온라인 취임식 생중계

○ 제39대 서울특별시시장 오프라인 취임식 정산 내역

구분	항목	세부내용	정산금액
시설물 설치	무대	- 메인무대바닥 18.2m * 7.2m * 60cm(H) / 백월 18.2m * 1.8m(H) - 공연단 아일랜드 스테이지(8.2m * 3.6m) / 슬라이드 8.2m * 60cm(H) - 웰컴백월 4.8m * 2.4m	9,900,000
	음향	- 50kw PA system / 콘솔 / 마이크 / 모니터 일체	5,500,000
	LED영상	- LED 3mm (18m * 5m)	19,800,000
	간선공사	- 음향(20kw) / 영상(40kw) / 조명(50kw) 간선공사비용	3,300,000
	구조물	- 영상 지지용 레이허 구조물, 조명타워 구조물	9,900,000
	조명	- moving /pin 추가 / 포토존 조명 - 100kw ledpar/moving/beam/pin 일체	8,800,000
	중계	- 자막기 / 콘솔 / 스위처 일체 (카메라 별도)	5,500,000
	소 계		
인건비	디자인 및 인건비	- 제작물 디자인 일체, 진행 인력 - 온라인초청장발송비용 / 명찰라벨작업 인건비(10명)	5,940,000
제작물 및 운영비	영상 제작	- 행사장 LED타이틀 루핑영상 (3종)	3,300,000
	운영비	- 리허설 및 본행사 준비물자구입 / 스텝 및 오퍼레이터 식대 외	5,500,000
	청소비	- 디디피 알림1관 사전 / 사후청소비용	1,485,000
	명찰제작	- 참가자 명찰 제작_4,000 / 주차권제작	3,300,000
	목수건	-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퍼포먼스용 수건 제작	6,545,000
	인쇄물	- 로비디스플레이베너 / 좌석안내POP(5set) / 주차장 안내베너 / 행사장POP일체 / 조명타워 가림막 설치(6면)	7,700,000
	소 계		
총 계			96,470,000

라. 조정교부금

-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3조 9,064억 1천만원) 대비 1조 1,435억 8천만원(29.3%)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5,049,993,540	3,906,413,120	1,143,580,420
자치구조정교부금	5,049,993,540	3,906,413,120	1,143,580,420

※ 자치구 자원조정교부금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를 근거로 시세의 일정액을 활용하여 합리적 자원배분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격차 등을 완화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구의 여러 여건에 맞춘 기본적인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재원을 보장해 주는 재정조정제도임.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치구조정교부금	○2021년 조정교부금 예결산 차액 반영 1,143,580,420,000원 = 1,143,580,420천원
	증감사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자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서울시 보통세 예·결산 차액의 22.6%를 조정교부금 추경예산 반영 ('21년 조정교부금 예결산 차액 1,237,685,420천원 중 '22년 1차 추경에서 기반영한 94,105,000천원을 제외한 1,143,580,420천원 반영)

〈'21년도 보통세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A)	결산액(B)	결산차액(B-A)
조정교부금(C×22.6%)	32,785	45,162	12,377
계(C=A+B)	145,066	199,831	54,765
보통세(A)	143,950	198,167	54,217
취 득 세	50,589	80,100	29,511
주 민 세	6,011	6,386	375
자동차세	11,862	11,641	△221
레 저 세	427	44	△383
담배소비세	5,802	5,942	140
지방소비세	17,294	19,780	2,486
지방소득세	51,964	74,273	22,309
지난연도 보통세(B)	1,116	1,664	548
취 득 세	63	243	180
주 민 세	51	54	3
자동차세	706	621	△85
지방소득세	296	746	450

-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근거 재산세 제외
- 2) 지방세법 제71조제3항 근거 지방소비세 중 지방교육세분 및 균특회계보전분 제외

○ 현재 시점에서 자치구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³⁾에 따라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책적 판단과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예산계상)

-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추경 편성 전후 자치구별 교부액 비교표〉

(단위 : 억원)

구 분	'22년 당초예산	'22년 추경예산(안)	증가액
합 계	38,123	50,500	12,377
일반조정교부금	34,311	45,450	11,139
종 로 구	620	948	328
중 구	138	427	289
용 산 구	722	1,099	377
성 동 구	1,144	1,540	396
광 진 구	1,403	1,858	455
동 대 문 구	1,779	2,260	480
중 량 구	1,905	2,428	523
성 북 구	2,172	2,714	542
강 북 구	1,967	2,506	539
도 봉 구	1,904	2,412	508
노 원 구	2,550	3,194	644
은 평 구	2,130	2,709	579
서 대 문 구	1,483	1,940	458
마 포 구	1,067	1,461	395
양 천 구	1,537	2,010	473
강 서 구	1,911	2,451	539
구 로 구	1,823	2,357	534
금 천 구	1,337	1,788	451
영 등 포 구	925	1,315	391
동 작 구	1,492	1,971	478
관 악 구	2,105	2,652	547
서 초 구	68	369	302
강 남 구	-	-	-
송 파 구	540	946	407
강 동 구	1,589	2,096	506
특별조정교부금	3,812	5,050	1,238

실시한 바가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회의시 개선·보강된 기준재정수요액
 추정항목, 측정단위와 새롭게 산정된 고정비용, 단위비용을 조례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개정되는만큼 적정한 조정교부금 산정과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요청이
 있는바, 이에 대한 행정국의 이행여부 점검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둘째, 과도한 결산차액(12,377억원)의 발생으로 뒤늦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교부할 경우 자치구 재정에서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자치구들의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바, 당초 보통세의 세입추계가 적절
 했는지 여부와 함께 조정교부금 재원으로서 보통세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조정교부금 정산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결산차액 (B-A)	비 고
'17년도	26,444	30,897	4,453	◦'18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18년도	29,214	33,241	4,027	◦'19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19년도	31,099	35,293	4,194	◦'20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20년도	32,869	40,553	7,685	◦'21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21년도	32,785	45,162	12,377	◦'22년 추경 계상하여 정산 예정

마. 지방선거 관리

- 행정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정 예산(439억 5천 3백만원) 대비 33억 2천 5백만원(7.6%)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40,628,044	43,952,740	△3,324,69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5,821	305,821	0
사무관리비	1,225,199	1,225,199	0
공공운영비	86,797	86,797	0
국내여비	170,000	170,000	0
기타부담금	38,840,227	42,164,923	△3,324,696

※ 시·구 선관위 선거사무 : 투개표 사무원 위촉, 투표소 설치,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소송·소청 비용 등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기 타 부 담 금	○보전비용 △3,324,696,000원 = △3,324,696천원
	증감사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 및 보전비용 확정에 따라 집행잔액 감추경

- 본 건은 관련법령(「공직선거법」 제277조4)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관리 준비·실시 및 후보자와 정당 보전비용 분담금의 정산 납부요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조정하려는 것임.
- 다만, 현행제도하에서는 선거관리경비의 과다한 집행잔액(2010년 5회: 43억, 2014년 6회: 84억, 2018년 7회: 60억, 2022년 8회: 34억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바, 향후 행정국에서는 선거준비·실시경비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 및 요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기타부담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타부담금)	선거관리경비 집행내역			
	편성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집행률(B/A)
2010년 5회 지방선거	35,051	25,502	4,349	72.8%
2014년 6회 지방선거	39,283	30,877	8,406	78.6%
2018년 7회 지방선거	42,233	36,202	6,031	85.7%
2022년 8회 지방선거	42,164	38,787	3,377	91.9%

※ 보궐선거 실시 후 선거비용 보전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2조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의 부담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음.

4) 「공직선거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1항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경비
2.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 다만, 선거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가 선거보전비용을 청구하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 후보자가 청구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요청을 하고 그 비용을 30일 이내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공직선거관리규칙」 제7조).
-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요청한 선거보전비용을 심사하여 보전 비용 결정 후 60일 이내에 시와 정산하도록 규정(「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제2항)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바.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 동 사업은 법령 등 지원근거가 있는 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단체 역량 강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것으로, 법정 단체 중 ‘서울시새마을회’에서 ‘2022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비 관련 기정 예산(5억 7천 8백만원)에서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9억 1천만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787,279	877,279	91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175,560	175,560	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23,719	123,719	0
민간행사사업보조	1,488,000	578,000	910,000

※ 기정예산 5억 7천 8백만원 중 동 추경예산편성사업인 ‘서울시새마을회’가 추진하는 ‘2022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행사 예산은 2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어있음.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장(회의장, 사무국 등) 시설 임차료	=	14,000천원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송출비	=	225,000천원
	-홍보스팟영상 제작 및 송출 15,000,000원*2종	=	30,000천원
	-방송 및 포털, SNS 홍보 50,000,000원*2종	=	100,000천원
	-현수막 등 제작 200,000원*200개	=	40,000천원
	-홍보아치, 선전탑 5,500,000원*10개	=	55,000천원

○행사 용역 등 진행비	=	631,000천원
-새마을회 성과영상물 제작 및 행사물품 구입	=	150,000천원
-전일행사 대행비(무대설치, 음향, 공연자 섭외 등) 195,000,000원*1식	=	195,000천원
-당일행사 대행비(대형화면 및 무대설치 등) 228,000,000원*1식	=	228,000천원
-오찬 및 만찬(식사 및 시설사용)	=	40,000천원
-행사 보험 및 행사장 방역	=	18,000천원
○리플릿, 성과보고집 발간 등 인쇄비	=	40,000천원
증감사유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 규모 대비 본예산 편성액이 적어 이에 대한 증액(910백만원) 반영		

- ‘2022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서울특별시새마을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2022년 10월 12일과 13일 전국 및 해외 새마을지도자 등 1만명의 참석자와 함께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사업임.

〈 ‘2022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 개요 〉

<input type="checkbox"/> 일	시 : 2022.11.23.(수) ~ 11.24.(목) / 2일간
<input type="checkbox"/> 장	소
○ 전일행사 :	잠실실내체육관 등(예정)
○ 본 행사 :	잠실올림픽체조경기장(예정)
<input type="checkbox"/> 주	관 : 서울특별시새마을회
<input type="checkbox"/> 행사내용	
○ 전일행사 :	지도자대회 내빈인사 및 축하공연, 시도대표자 만찬 등
○ 본 행사 :	활동영상 상영, 시상식, 오찬, 퍼포먼스 등
<input type="checkbox"/> 참	석 자 : 8천 ~ 1만 명(전국·해외 새마을지도자 및 각국 대사 등)

소요예산 : 1,200백만원

※ 당초 편성예산 290백만원으로 910백만원 추경예산 편성 필요

대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행사 홍보계획

○ 홍보기간 : 2022.11.01.~24.

○ 소요예산 : 237백만원

○ 홍보 세부내용

① 포털사이트 홍보(2022.11.12.~22., 10일간)

-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메인배너 광고 실시

② 방송사 홍보(2022.11.12.~22., 10일간)

- 방 송 사 : 공중파, 종편 및 YTN, 지역방송 등

- 횟 수 : 10일간 30회 이상

③ TV스팟 광고 : 20초 홍보용 스팟영상(2022.11.02.~22., 20일간)

- 영상자료 : 스팟 영상 2건 (서울시홍보, 시새마을회장단 인사)

- 광고매체 : KTX 경부, 호남, 강원선 및 서울버스 TV광고

④ 새마을가르기 게첨(2022. 11.16.~24., 8일간)

- 송파구 전역 가로변 게양대, 타 시도 참석 차량(버스) 이동 주요지점 설치

⑤ 홍보탑 및 홍보물 설치(2022. 11.1~24., 1개월간)

- 장 소 : 잠실체육관, 올림픽체조경기장, 송파구 일대, 행사장 주변

- 홍보내용 : 행사장 주변 홍보탑 설치, 서울 진입 톨게이트 입구 현수막 설치

※ 본대회 3일 전 환영 현수막으로 교체

세부내역 : 항목별 예산 세부내역 참조

(단위 : 백만원)

일자별	내역	금액
	계	1,200
전일행사(11.23.)	· 행사대행비, 만찬, 장소 및 버스 임차료 등	295
본 행사(11.24.)	· 행사대행비, 오찬, 장소 임차료 등	458
홍보 등 부대비용	· (홍보)홍보물 제작, 홍보플랫폼 이용 등	237
	· (기타)보험료, 행사물품 및 기념품 구입 등	210

- 동 행사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대부분이 환영행사 및 축사, 감사패 전달, 호텔 만찬, 축하공연, 경복궁·롯데타워 등 관광일정으로 구성되어있어, 국민운동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사업의 취지에 적합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됨.

〈 ‘2022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 세부계획 〉

행사 세부계획(일자별)

(1일차) 전일행사 및 내빈만찬

- 일 시 : 2022. 11. 23.(수) 13:00~19:00
 - (행사) 13:00~17:30 / (만찬) 17:30~19:00
- 장 소 : (행사)잠실실내체육관, (만찬)잠실롯데호텔
- 참 석 자 : (행사)5,000여명, (만찬)초청내빈 200여명
- 소요예산 : 295백만원
- 행사내용
 - 서울시 홍보영상 상영
 - 의식행사(개회사, 환영사, 격려사, 감사패 전달 등)
 - 탄소중립 퍼포먼스(서울특별시장, 서울시의회의장, 시 새마을회장단)
 - 축하공연(새로운 50년을 맞이하는 새마을 열린음악회) 등
 - 성악, 국악, 뮤지컬, 가요 등 다양한 장르공연 (*방송사 섭외하여 방송 송출 예정)
- 만찬내용 : 환영사 및 축사, 만찬 및 소통의 시간

(2일차) 본행사 및 내빈오찬

- 일 시 : 2022. 11. 24.(목) 10:00~13:30
 - (행사) 10:00~12:00 / (오찬) 12:20~13:30
- 장 소 : 잠실올림픽체조경기장
- 참 석 자 : (행사)8,000여명, (오찬)초청내빈 200여명
- 소요예산 : 458백만원

○ 행사내용

진행 내용	소요 시간(분)		비고
○ 식전 행사	(10:00 ~ 10:55)	(55)	
- 입장식	10:00 ~ 10:25	25	시도대표, 지구촌새마을지도자 등
- 내빈소개(자막)	10:25 ~ 10:30	5	주요 참석내빈
- 환영인사	10:30 ~ 10:33	3	서울시새마을회장(회장단)
- 축하공연	10:33 ~ 10:55	22	초대가수(3)
내빈 입장	10:55 ~ 11:00	(5)	주요 내빈
○ 본 행사	(11:00 ~ 12:00)	(60)	
- 개회 및 국민의례	11:00 ~ 11:05	5	사회, 국기에 대한 경례 등
- 2022 보람의 현장	11:05 ~ 11:11	6	추진실적 + 미래비전 영상
- 대회사	11:11 ~ 11:18	7	새마을운동중앙회장
- 환영사	11:18 ~ 11:23	5	서울특별시장
- 포상수여 등	11:23 ~ 11:48	24	
- 비전다짐	11:48 ~ 11:52	4	탄소중립 퍼포먼스
- 대회기 이양	11:52 ~ 11:56	4	서울시 ⇒ 2023년 개최지
- 새마을노래	11:56 ~ 12:00	4	1절
- 폐회	12:00		
○ 오찬	12:20 ~ 13:20	60	주요 내빈

(양일간) 해외참석자 서울시 투어

○ 투어개요

- 운영일시 : (1차)2022.11.23.(수) 09:30~13:00
(2차)2022.11.24.(목) 14:00~18:00
- 대상 : 45개 해외새마을지도자 회원국 대표 등 200여명
- 운영담당 : 서울시새마을회(운동지원과), 용산구사무국
- 운영코스 : 잠실 ⇨ 경복궁 ⇨ 롯데타워 ⇨ 잠실
- 후원 : 행정안전부(지구촌새마을과)

○ 서울관광 홍보부스 운영(전일행사 및 본행사)

- 서울 관광 홍보 브로셔 비치 : 10,000부
- 서울 관광 홍보 배너 게시 및 관광 해설사 배치

- 또한, 그동안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행사사업 보조’예산을 편성한 바 없음에도, 2021년 11월 ‘2022전국새마을 지도자대회’행사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됨에 따라 2022년 본예산에 2억 9천만원을 편성하고, 이에 더해 313.8% 증액된 9억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2억원을 행사비용으로 편성하는 것이 과도한 비용은 아닌지와 다른 법정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2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 항목별 예산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총 계		1,200	
임차료	소계	40	
	○ (11.23.) 전일 행사장 등 시설 임차료 : 10,000천원	10	
	○ (11.24.) 본행사장 임차료 : 20,000천원 - 회의장, 강의실, 사무국 등	20	
	○ (11.23.) 버스 및 숙박시설 임차료 : 10,000천원	10	
홍보비	소계	237	
	○ 홍보물 제작 - 홍보아치, 선전탑 : 5,500천원 × 10개 = 55,000천원 - 현수막 : 100천원 × 100개 = 10,000천원 - 대형현수막 : 1,500천원 20개 = 30,000천원 - 가로기(배너기) 20천원 × 600조 = 12,000천원	107	
	○ 홍보스팟영상(2건) 15,000천원 × 2종 = 30,000천원	30	
	○ 방송홍보 50,000천원 × 1종 = 50,000천원	50	
	○ 포털, SNS홍보 50,000천원 × 1종 = 50,000천원	50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진 행 비	소계		883	
		○전일행사대행비 : 245,000천원 × 1식 = 245,000천원 - 공연 무대설치, 음향장비, 공연자 섭외, 부대행사 부스 운영 - 퍼포먼스, 경호 및 주차요원 등 운영 등	245	
		○본행사 대행비 : 428,000천원 × 1식 = 428,000천원 - 무대설치, 음향, 조명, 카메라, 안내판, BH전용용품 - 행사장 주변 장식, 아나운서, 통역요원 등 행사 관계자 섭외 - 포토존 설치, 초청장 제작 등	428	
		○새마을회 성과 영상물 제작 30,000천원	30	
		○오찬(식사 및 시설사용) 10,000천원	10	
		○만찬(식사 및 시설사용) 30,000천원	30	
		○태극기 및 새마을기 : 20천원 × 10,000개 = 2,000천원	20	
		○행사관계자 상해보험 : 10,000천원	10	
		○행사준비물품 및 사무용품 : 10,000천원	10	
		○기념품 10천원 × 10,000개 = 100,000천원	100	
인 쇄 비	소계		40	
		○전일행사 브로슈어 : 1천원 × 10,000부 = 10,000천원	10	
		○행사 리플릿, 입장카드, 주차카드 등 10,000천원	10	
		○비표(벤티지) 1천원 × 10,000부 = 10,000천원	10	
		○성과보고집 발간 10,000천원	10	

〈 최근 5년간 법정단체 지원 예산 현황 〉

(단위 : 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사업비	670,000	456,000	684,000	354,000	877,279
민간자본사업보조	125,000	6,000	70,000	-	-
서울시새마을회	125,000	-	-	-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	6,000	70,000	-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	-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	-	-	-	-
민간경상사업보조	545,000	450,000	555,000	204,000	175,560
서울시새마을회	366,000	76,000	226,000	60,800	52,320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60,000	60,000	60,000	48,000	41,310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60,000	60,000	60,000	48,000	41,3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59,000	59,000	59,000	47,200	40,62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	150,000	150,000	123,719
서울시새마을회	-	-	40,968	40,938	35,569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	-	37,474	35,044	31,176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	-	37,305	38,974	32,07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	-	34,253	35,044	23,900
민간행사사업보조	-	-	-	-	578,000
서울시새마을회	-	-	-	-	290,000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	-	-	-	288,000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	-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	-	-	-	-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2020년부터 지원.

※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단체의 수요가 있을때만 내역 검토 후 지원.

※ '국민운동단체 등' 예산 세부 사업에 '자율방범연합회' 단체도 포함되었으나 2021년 자치경찰 위원회로 업무이관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제4차 투자심사(2022.6.14.) 결과 행사주제와 연계된 프로그램 구성, 대시민 홍보 강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안한 방역비용 반영, 철저한 성과평가 진행 등을 조건으로 추진 의견을 밝힌 바 있음.

〈 제4차 투자심사 심사결과(2022.6.14.) 〉

사 업 명	1.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부 서 명	자치행정과
심사결과 및 내용	<p>[조건부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대국민운동 등 행사주제와 해외 참석자 서울시 투어 등 프로그램 간 연계성 강화 ○ 서울 등 대도시 새마을운동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시민 홍보방안 마련 ○ 향후 코로나 확산 추이를 감안하여 방역조치 이행과 방역비용 반영 ○ 대규모 행사성 사업임을 고려하여 사업 완료 후 철저한 성과평가 실시
사 업 비	12,000백만원 (전액 시비)

※ 「지방재정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를 위한 사전절차 대상임.

투자심사 개요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제4항 등

제36조(예산의 편성)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심사대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시 신규투자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
- 투자심사를 위한 사전절차
 -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기본계획 수립 (모든 사업)
 - 지방재정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한함)

사. 국고보조금 반환

- 행정국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기정 예산(1천 5백만원) 대비 1천 1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2021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액에 대한 반환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6,045	15,428	10,617
국고보조금반환금	26,045	15,428	10,617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국 고 보 조 금 반 환 금	○2021년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9,494,580원 = 9,495천원
	○2021년 유해매장추정지 안내포시판 관리지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121,840원 = 1,122천원
	증감사유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발생

- 국고보조금 반환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⁵⁾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국고보조금 반환 절차〉



※ 국고보조금이란 국가의 감독을 받는 의존재원으로서,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방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임.

- 다만,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사업 등의 경우 반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보조금 반환금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설계 및 집행을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자치행정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납내역〉

(단위 : 원)

연번	연도	사업명	요구액
		계	30,592,010
1	2020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2019년)	3,609,560
2	2020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2018년)	51,550
3	2020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2019년)	1,324,980
4	202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2020년)	7,196,010
5	2021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2020년)	7,869,010
6	2021	유해매장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지원(2020년)	10,540,900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관련 보조금 정산 결과〉

(단위 : 원, %)

구분	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C) (C=B/A*100)	집행잔액(D) (D=A-B)	이자액(E)	총반납액(F) (F=D+E)
합계	154,000,000	122,846,070	79.8	31,153,930	720,980	31,874,910
서울	16,000,000	6,598,290	41.2	9,401,710	92,870	9,494,580
부산	13,700,000	9,163,700	66.9	4,536,300	74,250	4,610,550
대구	7,200,000	7,094,100	98.5	105,900	42,680	148,580
인천	7,000,000	1,408,650	20.1	5,591,350	87,080	5,678,430
광주	8,100,000	7,588,540	93.7	511,460	73,850	585,310
대전	5,700,000	5,015,800	88.0	684,200	35,610	719,810
울산	12,300,000	12,300,000	100.0	-	57,010	57,010
세종	4,700,000	2,871,950	61.1	1,828,050	26,480	1,854,530
경기	16,700,000	14,394,880	86.2	2,305,120	77,230	2,382,350
강원	5,800,000	5,143,900	88.7	656,100	6,230	662,330
충북	6,000,000	5,153,140	85.9	846,860	39,240	886,100
충남	6,900,000	3,893,420	56.4	3,006,580	20,030	3,027,200
전북	6,700,000	6,187,400	92.3	512,600	4,100	516,700
전남	7,600,000	7,600,000	100.0	-	6,220	6,220
경북	12,500,000	12,500,000	100.0	-	65,900	65,900
경남	12,500,000	11,332,300	90.7	1,167,700	12,200	1,179,900
제주	4,600,000	4,600,000	100.0	-	-	-

아.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우려

- 「지방자치법」 제145조⁶⁾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⁷⁾에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예산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⁸⁾에 따라 의회의 충분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장의 예산안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3,709억원을 편성하고도 제311회 임시회 개최일(7월 15일)의 불과 이틀 전인 7월 13일에 제출되었는바, 민선 8기 출범 후 첫 번째 추경인점을 감안하더라도 행정국이 제출한 추경예산 편성 사업은 이와 관련 없는 “주요 시정행사 지원”,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기록정보 관리”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어 긴급을 요한다고 볼 수 없고,
 -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충분한 검토 및 심의에 시간적 제약이 뒤따르게 되어 의회의 심의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편법적인 행정절차로 보이는바, 이러한 악습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행정절차를 엄수하도록 하는 집행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김민정
------	-----	-------	-----

6)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7)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